##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(곽상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76 발의연월일: 2024. 12. 13.

발 의 자: 곽상언·강훈식·김 윤

민병덕 • 박민규 • 박지원

박희승 · 송재봉 · 윤종군

이워택 • 한준호 • 허성무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

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는 「대한민국헌법」 제79조는 사면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한편, 사면·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사면권의 제한은 입법부가 법률로써 할 수 있도록 하고있음.

현행 「사면법」은 사면·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, 최소한 헌정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범죄인 내란·외환의 죄에 대하여 헌법이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적 가치에 대한 자기파괴적인 행위이므로 제한되어야 함.

이에 법 제3조 단서를 신설하여 내란의 죄,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사면·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「형법」 제2편제1장 내란의 죄, 제 2장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함(안 제3조 단 서 신설). 법률 제 호

##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형법」 제2편제1장 내란의 죄,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(사면 등의 대상) 사면, 감	제3조(사면 등의 대상)		
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			
호와 같다. <u>&lt;단서 신설&gt;</u>	<u>다만, 「형법」</u>		
	제2편제1장 내란의 죄, 제2장		
	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		
	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.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